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 담당 : 이영옥 간사 : 723-5056)  
제 목 국민연금 관련 법률 개정 입법청원  
날 짜 1998. 5. 12. (총 25쪽)

## 보 도 자 료

### 국민연금 관련 법률 개정 입법청원

일시 및 장소 : 1998. 5. 12 (화) 오후 3시

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金重培·金昌國·朴相增) 사회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白鍾萬)는 5월 12일 오후 3시,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과 연금기금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기금관리기본법, 재정융자특별회계법, 예산회계법 등 국민연금 관련 법률 개정 입법청원을 한다.
2. 2031년이면 국민연금기금액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으며, 기금운용부실로 인한 연금기금손실액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을 비롯한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기금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기금손실을 막을 수 없으며, 연금재정의 불안전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음을 누누히 강조하였고, 기금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여 왔다.
3. 그러나 정부안으로 제출된 국민연금법개정(안)은 학계 및 노동,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한 제도 개혁을 수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보건복지부에서 애초에 제안한 전향적인 법안내용이 국무회의와 차관회의의 조정과정에서 '기금운용위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조정되고 '기금운용의 사용내역 공시, 예탁이자를 법적 명문화' 등의 조항이 삭제되는 등 재정경제부에 의해 상당정도 법안이 훼손되었고, 노사정 합의사항 중 하나인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 5조 1항의 폐지문제도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4. 따라서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의 국민적 신뢰회복을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의 개선에 초점을 맞춰 국민연금 관련 5개 법안에 대해 개정 입법청원을 하는 바이고,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정부의 무제한적이고 편의적인 연금기금 차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운용을 결정하고, 기금의 국공채 매입을 의무화하였으며, 국민연금기금을 정부가 차입할 경우 별도의 계정(재정용자특별회계에 '국민연금계정'신설)을 신설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가입자 참여 확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 되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연금기금운영평가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제기하였다.

둘째,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안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 5조 1항 1호를 삭제하여 연금기금의 공공자금으로의 강제예탁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셋째,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에는 기금의 투명한 운용 및 국회의 실질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금운용계획이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도록 하였다.

넷째, 재정용자특별회계법 개정안에는 '국민연금계정'을 신설하여 연금기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기금운용에 대한 사후 평가를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공공부문으로 투자된 국민연금기금은 국공채 인수에만 쓰이도록 했다.

다섯째, 예산회계법 개정안에는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운용할 수 있는 예산회계법을 개정하여 국민연금기금도 세입세출예산처럼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다.

5. 또한 참여연대가 입법청원하는 국민연금법개정안에는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임금대체율을 40년 가입한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55%로 조정한 정부안을 수용하되,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급여액을 인상하고, 독신연금수급자와 부부연금수급자의 급여액을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으로 각각 50%와 5%로 분리하여 독신연금수급자의 임금대체율을 50%가 되도록 연금액을 인하하였다.

#### ▣별첨자료▣

1. 국민연금 관련 법률 개정법(안) 청원의 주요 내용
2. 국민연금법 개정법률 입법청원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 입법청원안
4. 기금관리기본법중 개정 법률안
5. 재정용자특별회계법 개정 법률안
6.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 입법청원안

# 국민연금 관련 법률 개정법(안) 청원의 주요 내용

## I. 입법 청원의 배경

□ 국민연금제도는 전국민의 노후생활을 책임지는 막중한 기능을 갖고 있는 제도인 동시에, 막대한 기금규모로 인해 기금운용이 잘못될 경우, 전국민의 노후보장이 위협되는 것은 물론이며 경제에 미치는 악 영향은 IMF의 충격 이상으로 심대할 것임.

□ 그 동안 시민단체 및 노동계, 경영계, 학계 등에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기금운용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정부가 기금손실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 왔으며, 제도 개선을 촉구해 왔음.

□ 그러나 정부안으로 제출된 국민연금법개정(안)은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한 제도 개혁을 수용하지 못하고, 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냉소를 자아내고 있음. 보건복지부에서 애초에 제안한 전향적인 법안 내용이 국무회의와 차관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재정경제부에 의해 손상되는 상황이며, 노사정 합의사항 중의 하나인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 5조 1항의 폐지문제도 전혀 거론하지 않는 등 가장 기본적인 국민적 신뢰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는 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과 연금기금 파탄이 경제에 미칠 악 영향을 심사숙고하여 급여수준의 인하라는 불이익을 수용하려는 성의를 보이고 있으나 재정경제부는 국민연금기금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에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는 등 일방적인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음.

□ 노동계 및 시민단체는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에 대한 정부의 가시적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어떠한 제도 개선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며, 이 이후 벌어지는 연금제도의 혼란 등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측에 있음. 국민연금의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의 개선에 초점을 맞춰 국민연금관련 5개 법안에 대해 입법청원을 함.

## II. 개정 입법 청원 5개 법률

1. 국민연금법 개정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안
3.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김병태의원 등 29명이 발의한 개정안과 동일)
4. 재정융자특별회계법
5. 예산회계법 개정안

## III. 국민연금기금운용 관련 입법 청원의 주요 내용

### 1. 국민연금법 개정안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운용 결정하고, 기금의 국공채 매입 의무화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운용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무제한적이고 편의적인 연금기금 차입에 제동 장치를 마련하며(안 제83조 2항), 이자율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기금손실을 최소화시킴(안 제 83조 3항).
-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을 차입할 경우 예수금증서 대신 국공채를 매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① 연금기금 차입 규모 및 무제한적인 기금 차입에 대한 국회통제를 제도화하고, ② 연금기금 상환의 확실성을 담보하며, ③ 기금의 사용 내역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83조 2항)

- 국민연금기금을 정부가 차입할 경우 별도의 계정을 신설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그 계리 결과 및 세부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물론, 결산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83조 4항 5항). 이 조항은 국민연금기금이 여타 재원과 혼합되어 사용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 미흡과 상환의 불확실성이 제기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재정용자특별회계에 '국민연금계정' 신설)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가입자 참여 확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 되도록 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수를 21인으로 하되, 정부측 위원 7인 외에 노조 추천 위원 2인, 사용자 추천 2인, 지역가입자 3인,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3인, 공익위원 4인 등이 위원이 되도록 하고, 가입자 대표가 재적위원의 1/2이상 되도록 법률에 규정함(안 84조 3항). 이 조항은 가입자 대표가 실질적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결정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일방적인 기금운용을 제어하는 장치임.

- 또한 정부안에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하고 재경부장관, 복지부장관 등이 정부측위원으로 되어 있으나 청원안에는 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재경부차관, 노동부차관, 기획예산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정부측 위원이 되도록 조정함(안 84조 3항). 이 조항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될 경우 실질적인 회의가 어려우며, 재경부의 기금운용에 대한 일방적 영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또한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절차, 회의록 비치 및 회의록 공개, 서면회의 금지 등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회의가 이루어지고 회의내용이 국민에게 공개되도록 의무화하였음(안 84조 4항, 5항, 6항) .

□ 국민연금기금운영평가위원회의 신설

- 운영평가위원회는 가입자들이 추천하는 5-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기금운용감사 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 및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 하도록 의무화함(안 제84조의 1). 이 위원회는 가입자들이 기금관리운영 결과를 평가, 감사하며, 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기타 기금관련 사항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비상임이사를 6인으로 확대하는 정부안을 구체화하여 비상임이사 3인을 가입자 대표로 하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였고, 가입자를 대표하는 감사 1인을 추가하여, 공단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
-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법률로서 명시하고, 가입자 대표 다수가 참여하도록 명문화하였음(안 제5조).
- 재정재계산에 대한 정부안을 법률에 구체화하여, 재정재계산뿐만 아니라 연금기금의 장기투자계획 작성 의무화 및 국회 승인, 그리고 재정재계산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함(안 제4조의 2)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안

- 국민연금기금의 강제 예탁을 의무화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 5조 1항 1호를 삭제함.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1항 1조의 삭제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자금으로의 강제예탁이 없어지며,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재경부장관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협의하여 기금운용을 결정하게 됨.

3.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 공공기금운용계획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도록 하여 기금의 투명한 운용 및 국회의 실질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7조)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국회의 보고의무만이 규정되어 있는 법을 개정하여 운용계획단계부터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함.

#### 4. 재정용자특별회계법 개정안

재정용자특별회계법에 “국민연금계정”을 신설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사용 내역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기금운용에 대한 사후 평가를 가능하도록 함.(안 제4조)

공공부문으로 투자된 국민연금기금은 국공채 인수에만 쓰이도록 함(안 제5조)

#### 5. 예산회계법 개정안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즉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운용할 수 있는 예산회계법을 개정하여 국민연금기금도 세입세출예산처럼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안 제7조 1항).

이는 국회의 예산, 결산 심의의결권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며 각종 기금이 국회의 통제 없이 운용하고 있는 폐단을 시정함으로써 현재의 각종 기금을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여 운용토록 강제하는 효과도 있음.

#### IV. 국민연금급여 관련 입법 청원안 주요 내용

국민연금의 임금대체율을 40년 가입한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55%로 조정할 정 부안을 수용하되,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급여액을 인상하고, 독신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을 인하하는 등 부분적인 수정을 함.

- ☞  독신연금수급자와 부부연금수급자에게 동일한 급여액을 지급하는 것은 가족수에 따른 생활비의 차이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을 각각 50%와 5%로 분리하여 독신연금수급자의 임금대체율을 50%가 되도록 함(안 제47조 및 48조). 단, 부부연금수급자는 정부안대로 55%로 함.
  
- 장애연금의 급여수준을 장애 1등급을 기준으로 평균소득자일 경우 47.75% (기본연금 37.5%, 배우자 가급연금 3.75%, 자녀 2명 4.5%)로 조정하여 ILO 규정에 의한 급여수준을 충족토록 함(안 제59조).
  
- 유족연금의 급여수준을 25% 로 설정함으로써 연금수급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득상실의 위험을 줄임(안제 64조)

# 국민연금법 개정법률 입법청원

## I. 제안 이유

정부는 기존의 국민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일부 개선사항을 포함하여 도시자영자의 강제가입과 연금급여의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의 전면개정안을 마련하여 98. 10. 1.자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준비중에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와 같은 개정안은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연금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의무예탁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폐지와 국민연금의 별도 계정 신설, 국공채 매입을 통한 재정자금화 등의 문제 해결 노력과 동시에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현정부가 취임 이전에 국민들 앞에 약속하였던 제1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사항이기도 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의무예탁규정의 폐지”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현정부 역시 전임 정권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의 책임재산인 연금기금을 부족한 정부재정을 보충하는 재정자금으로 무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더욱이 기금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보험화에 따른 보험료 부과 및 징수체계의 개선이나 소득 및 자산과약 시스템의 개발, 연금재정안정을 위한 반환일시금 문제 등 수많은 현안이 중첩되어 나타남으로써 정부의 개정안은 제도개선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 참여연대 및 양대 노총은 국민연금제도가 그야말로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써 작용하기를 간절하게 염원하면서 국민연금법 개정의 전제조건으로서 현정부가 국민 앞에서 약속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제1항의 의무예탁규정의 전면폐지와 이에 부수한 기금관리기본법, 재정융자특별회계법,

예산회계법의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안과 함께 다음과 같이 국민연금법 개정 입법 청원안을 제출한다.

1998년 5월 12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별 첨 : 입법청원안

## I. 제1장 총 칙 - 부분 개정

1. 제3조 (정의 등) 중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생계를 같이하는 것과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안 취지 : 정부안대로 급여수급권자의 범위를 정하는 생계유지 인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수급권을 보장하고, 그 내용을 명확히 함

2. 제4조의 2 (재정안정 및 재정계산 등)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 법에 의한 연금보험료는 급여에 필요한 비용이 확보되고 국민연금 재정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향후 연금재정 전망, 보험료 조정, 연금기금투자 계획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이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국회의 승인을 받은 계획에 따라 보험료 및 급여 조정에 관한 재정계산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2,3항의 재정조정계산 관련 정보는 가입자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안 취지 :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위한 재정재계산제도를 도입하되,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내용이 가입자들에게 공개되도록 명시함

제5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전면 개정한다.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1.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사항
2. 급여에 관한 사항
3. 연금보험료에 관한 사항

4.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5. 기타 국민연금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3인
2.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3인
3. 농어민단체가 추천하는 자와 기타 지역가입자를 대표할 수 있는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중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자로서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3인
4. 국민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5인

③ 기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안취지 :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며, 위원들 역시 가입자의 대표성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토록 한다.

## II. 제3장 국민연금관리공단 - 부분 개정

1. 제28조 [임원]을 다음과 같이 전면 개정한다.

① 공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상임이사 3인 이내, 이사 6인, 상임감사 1인, 및 가입자를 대표하는 감사 1인을 둔다.

②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고, 상임이사와 이사, 상임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가입자를 대표하는 감사는 이사 중 4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연직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는 각 가입자별 직역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각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제안취지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운영에 각 지역, 직역별 가입자대표들이 참여함으로써 가입자의 실질적인 기금운용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특히 직역별가입자의 대표로 구성된 (비상임)이사들중 4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를 (비상임)감사로 두게 함으로써 공단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한다.

### III. 제4장 급 여 - 부분 개정

1. 제47조 (기본연금액)중 제 1,2,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1천분의 6.25에 가입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연금수급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매년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은 과년도의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하여 총 가입기간으로 나누어 얻은 금액으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제1호의 평균소득월액의 변동율을 기준으로 하여 과년도의 연도별 재평가율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매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안취지 : 0 기본연금액의 40년 가입기간 소득대체율을 50%로 함

0 연 단위 산정방식에서 월단위 산정방식으로 전환

0 1항 제2호의 금액의 산정방식을 법률에 명시하고, 기존 47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소정의 0.75 상수 적용 근거를 폐지함으로써 정부의 필요에 따른 연금액 조정의 위협을 차단하고자 함.

2. 제48조(가급연금액)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가급연금액은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 그 자(유족연급에 있어서는 가입자이었던 자를 말한다.)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각기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배우자에 대하여는 연금수급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의 1천분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입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18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녀(다만, 2인 이하에 한한다.) 및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각기 연금수급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의 1천분의 0.75에 해당하는 금

액에 가입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급연금액은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하되, 연금수급 개시후 또는 최종조정후 연1천분의 100 이상에 달하거나 매년의 변동률의 합이 1천분의 100이상에 달한 때에 그 변동률만큼 조정한다.

제안 취지 : 0 배우자에 대한 가급급여 수준을 40년 가입 기준으로 평균소득월액의 5% 정도로 현실화한다.

0 가급연금급여를 가입기간과 비례토록 하여 가족수의 따른 지출 차이 보전 기능을 강화함과 아울러 초기가입세대의 상대적 과다급여를 방지하여 상대적인 형평성을 유지토록 한다.

0 사회적 형평성과 적정성, 보험수리원칙을 연계토록 한다.

3. 제49조 (연금액의 최고한도)를 법제47조 제2,3항의 전면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금의 월지급액은 연금수급전년도를 기준으로 한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4. 제56조 [노령연금의 수급권자]를 다음과 같이 전면 개정한다.

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60세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이하 “특수직종근로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55세]에 달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②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60세에 달하지 아니하더라도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③ 제1,2항에서 정한 연금수급권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정지한다.

제안취지 : 0 기존의 감액노령연금을 노령연금에 흡수하여 불합리한 감액을 시정한다.

- 0 조기노령연금을 장기 가입자에 국한하게 하여 장기재정안정을 도모한다.
- 0 조기노령연금에도 재직자노령연금을 적용하여 65세 미만의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촉진하고 이중의 이득을 방지토록 제도화한다.

3. 제57조(노령연금액)중 기존의 제2항을 폐지하고 기존의 제3,4항을 제2,3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전면 개정한다.

② 55세 이상 60세 미만의 조기연금수급자가 생활보호법 소정의 당해년도의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의 1천분의 500을 노령연금액에서 감한다.

③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수급자가 제2항의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의 1천분의 300을 노령연금액에서 감한다.

제안취지 : 재직자노령연금의 경우에도 조기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의 경우를 차등 적용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고 재직자 노령연금의 산정방식을 합리화한다.

4. 제57조의 1(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의 병급조정)을 신설한다.

55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수급자가 고용보험으로부터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노령연금을 지급정지한다.

제안취지 ; 현행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지급시 연금수급자의 2중 이득을 방지토록 한다.

5. 제59조(장해연금)을 다음과 같이 전면 개정한다.

① 장해연금액은 장해등급에 따라 구분한 다음 각호의 액으로 한다. 단,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의 계산시 가입월수가 360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60개월로 계산한다.

1.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는 기본연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

2. 장해등급 2급에 해당하는 자는 기본연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의 1천분의 800

3.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는 기본연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의 1천분의 600

② 장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자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제안취지 : 0 장해연금의 급여수준을 평균소득자를 기준으로 할 때 47.75%상당(기본연금 37.5%, 배우자 가급연금 3.75%, 자녀 2명 4.5%)이 되도록 하여 ILO 규정에 의한 급여수준을 충족토록 한다.

0 장해등급 4급에 대한 장해 일시보상금을 상향조정하여 현실화한다.

6. 제6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를 다음과 같이 전면개정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 노령연금수급권자
2. 가입자
3. 장해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연금수급권자

② 초진일 현재 가입자이었던 자가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가입중의 초진일 또는 가입자자격 상실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 또는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안취지 : 연금가입자였던 자가 가입기간중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일정기간내에 사망할 경우 연금가입기간의 제한이 없이 당해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토록 강제한다.

7. 제64조(유족연금액)을 다음과 같이 전면개정한다.

① 유족연금액은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의 1천분의 600으로 한다. 단,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의 계산시 가입월수가 360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60개월로 계산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7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

제안취지 : 유족연금액의 상향조정을 통하여 연금수급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득상실의 위험을 연금재정이 상당부분 인수토록하여 연금액을 현실화한다. (평균 소득자의 약 25% 상당)

#### IV. 국민연금법 제6장 [국민연금기금] - 전면개정

1. 제83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2,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유지를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한으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타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의 투자는 국민연금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단, 제2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의 사전협의와 국회의 사전동의를 거쳐 국,공채 매입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1. ---
2. 공공사업을 위한 재정자금에의 예탁 및 타 기금에의 예탁
- 3.---
- 4.---
- 5.---
6. 기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금에 대한 예탁 등을 제외한 기금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취 지 : 0 국민연금제도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는 여타 법률에 의한 기금 운용의 왜곡 현상을 예방

0 국민연금기금을 아무런 통제, 안전장치없이 재정자금으로 전용하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예수금증서가 아닌 국,공채를 통한 환가성을 확보하고, 재정자금 및 타 기금에의 예탁시 국회의 사전 동의 요구

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기금 운용 법제화

0 대통령령 등에 의하여 단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이상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우회적인 재정자금화할 위험을 차단하고 대통령령에 의하여 규율될 사항을 제한함으로써 수익성을 최대한 보장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서는 제5호를 제외하고는 그 이자율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7조 제2항의 규정 등에도 불구하고 그 수익이 최근년도에 발행된 5년 만기 국채 수준 이상의 범위내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에서 결정한다.

취지 : 수익율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필요에 따라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령”에서 정할 수 있는 현행 법령을 폐단을 시정함과 아울러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수익성을 최소한 국채의 수익율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함.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영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을 계리하여야 하며, 계리결과 및 그 세부자료를 매 회계년도별 정기국회 이전에 이를 국회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세부적인 결산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기존의 4항을 대체)

취지 : 0 국민연금기금의 운영 관련 회계결과 및 세부자료의 국회 제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대한 제출을 강제함으로써 국회 통제 확보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권한을 강화를 도모함.

0 개보험화에 대비하여 연금가입자들에 대한 연금운용 내역 공표의무를 신설, 참여권 보장

⑤ (신설)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예탁된 자금은 정부의 별도의 연금기금 계정과 예탁된 기금에서의 별도의 독립된 계정을 각 신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취지 : 국,공채를 매입하여 재정자금화한다고 하여도 국민연금사업의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의 성격을 고려할 때, 동 자금의 사용 내역은 투명성을 보장하여야 함.

#### 제84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① 전조의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의 의결을 포함하여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취지 : 운용위원회의 업무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함.

② 운용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의결시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③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농림부

차관,산업자원부차관,노동부차관,기획예산위원회부위원장 및 공단이사장과 다음 각호의 자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단, 위원 구성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재적위원의 2분의1을 초과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2인
2.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2인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3인
4. 국민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3인
5. 기타 국민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공익위원 4인

취 지 : 0 기금운용위원회의 가입자 의사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0 정부 부처 위원중 재경원장관은 위원장으로서 의결권 제한, 타 부처 장관들의 위원 배제로 실질적인 의결기관화

④ (신설)위원장,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취 지 : 위원의 임기보장을 통한 신분보장

⑤(신설) 운용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신설)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불출석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⑦ 기금관련담당부서는 위원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5,6,7항 취지 : 위원회 운영의 실질화,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채 형식적인 서면결의에 의한 의결 방지, 기금운용 관련 자료 공개를 통한 투명성 보장

⑧ 운용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의 1 [국민연금기금운용 평가위원회] (신 설)

①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하되, 각 위원로 구성하되는 가입자별 각 직역을 대표하는 자가 추천하는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농·어·민 가입자를 대표하는 자, 도시 자영인을 대표하는 자 각 1인으로 구성하며, 그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 가입자의 직역별로 지명된 자도 각 직역을 대표하는 자로 본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간에 호선하며,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계전문인 중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제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⑤ 기금관련담당부서는 위원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평가위원회는 기금운용감사결과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경유하여 정기국회 1개월 전에 국회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취 지 : 가입자들의 대표에 의하여 기금 관리운용결과를 평가, 감사하여 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적정성, 투명성 및 국민의 운영참가를 보장함.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 입법청원안

1. 주요 골자 :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로의 의무예탁규정 폐지

2. 개정안의 내용

제5조 [ 관리기금에의 예탁의무 ] 1항 다음 각호의 기금·채신예금 및 자산(이하 “기금등” 이라한다.)의 관리자는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아니하다.

제1호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기금 - 삭 제

취 지 : 의무예탁규정의 폐지로 국민연금기금의 일방적인 재정자금화 방지, 국민연금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된 수익성, 안정성, 투명성 및 운용상의 민주성을 확보하고자 함.

# 기금관리기본법중 개정법률안

## 1. 주요 골자 :

□ 공공기금운용계획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도록 하여 기금의 투명한 운용 및 국회의 실질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7조)

□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국회의 보고의무만이 규정되어 있는 법을 개정하여 운용계획단계부터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함.

\* 이 개정안은 국민회의 김병태 의원 등 29명이 98년 4월 8일 의원입법으로 제안한 기금관리기본법의 내용과 동일함.

## 2. 개정법안의 내용

제5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① 기금관리 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기금관리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전년도 8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조 제1항 제1호의 공공자금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경우 공공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기금운용계획”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및 제4항중 “기금운용계획”을 각각 “기금운용계획안”으로 한다.

- 제7조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① 정부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공공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또는 차입금의 한도액은 예산회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총칙에 규정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때까지 기금운용계획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기금 관리주체는 국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될때까지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 8조의 제목 중 “기금운용계획”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한다

제 8조의 2항을 삭제한다

제8조 제3항중 “또는 주요 항목의 지출금액”을 지출금액으로 하고 “감사원, 경제기획원 장관 및 재무부장관”을 “감사원 및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재정용자특별회계법 개정법률안

### 1. 주요 골자 :

- 재정용자특별회계법에 “국민연금계정”을 신설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사용 내역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기금운용에 대한 사후 평가를 가능하도록 함.(안 제4조)
- 공공부문으로 투자된 국민연금기금은 국공채 인수에만 쓰이도록 함(안 제5조)

### 2. 개정법안의 내용

#### 제4조 개정

제4조 (계정의 구분) “이 회계는 용자계정 및 차관계정으로 구분한다”를 “ 이 회계는 국민연금계정, 용자계정 및 차관계정으로 구분한다”로 개정함

#### 제 5 조 : 신설

제 5조 (국민연금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국민연금계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국민연금기금의 예탁금
2. 국공채의 원리금 수입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② 국민연금계정은 다음 각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1. 국공채의 인수
2. 국민연금기금 차입의 원리금 및 이자 상환
3. 국민연금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

## 예산회계법중 개정법률 입법청원안

1.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세입세출예산으로의 편입을 통한 국회 통제강화

2. 개정안의 내용 :

제7조 [기금의 설치] 중 제2항을 “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취지 : 국회의 예산, 결산 심의의결권을 본질적으로 훼손하여 각종 특별기금을 설치하여 국회의 통제없이 운용하고 있는 폐단을 시정하고, 현재의 각종 기금을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여 운용토록 강제함.